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. 19 선고 2022가단1050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4. 3 선고 2023나21537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1. 19 선고 2022가단105055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

피 고 B

변론종결 2022. 12. 22.

판결선고 2023. 1. 19.

주문

1. C과 피고 사이에 315,000,000원에 관하여 2017. 12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98,784,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8,784,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 중 1/4은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C과 피고 사이에, 60,000,000원에 관하여 2017. 10. 17. 체결된 증여계약과 315,000,000원에 관하여 2017. 12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98,784,93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6. 11. 1. C에게 50,000,000원을 대여하면서, 2017. 4. 30.과 2017. 8. 31.에 각 25,000,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, C이 위 변제기일 이전에 변제하면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되, 그 이후에는 월 1.5%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그 후 위 각 변제기일이 도래한 후에도 현재까지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, 2022. 11. 30.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50,000,000원과 이자 48,784,930원 등 합계 98,784,930원이다.

다. 한편, C은 2017. 10. 16. 그 소유이던 서울 강동구 D 소재 아파트 제8층 E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하여 F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15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라. 그 후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조로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2017. 10. 16. 5,000,000원, 2017. 10. 17. 55,000,000원을 각 입금하였다.

마. 2017. 10. 17. C이 그 처인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에 60,000,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1차 증여'라고 한다).

바. 2017. 10. 18. 피고가 H와 사이에, H 소유의 서울 강동구 I 소재 다세대주택 제4층 J호(이하 ‘이 사건 다세대주택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, 계약금을 40,000,000원, 잔금을 36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

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피고가 H 명의의 K은행 계좌에 40,000,000원을 입금하였다.사. 2017.

12. 22. F이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일부 지급조로 315,000,000원의 자기앞수표를

교부하였고, 같은 날 C이 피고에게 315,000,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

증여하였으며(이하 ‘이 사건 2차 증여’라고 한다), 같은 날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

잔금일부 지급조로 315,000,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.

아. 2017. 12. 22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G은행과 주식회사 L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

날자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고,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

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자. 같은 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

경료되었다.

차. 이 사건 1차 증여 당시 C은, 적극재산으로 시가 615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

공시지가 31,801,536원의 경기도 가평군 M 임야 42,744㎡(1)를 보유하고 있었으나, 소극재산으로

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은행과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240,000,000원

가량과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,000,000원 등이 있었다.

카.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C은,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31,801,536원의 경기도 가평군 M 임야

42,744㎡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일부조로 F으로부터 수령한 315,000,000원의 자기앞수표를

보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,000,000원 등이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4호증,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은행에

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2016. 11. 1.자 대여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1, 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7. 10. 17.과 2017. 12. 22.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’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,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(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). 한편,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, ① 이 사건 1차 증여일인 2017. 10. 17. 당시에는 C의 적극재산이 646,801,536원(=615,000,000원 + 31,801,536원)이고 소극재산이 290,000,000원(=240,000,000원 + 50,000,000원)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이고, 위 적극재산에서 이 사건 1차 증여금액인 60,000,000원을 빼더라도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이며, 달리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나, ② 이 사건 2차 증여일인 2017. 12. 22. 당시에는 C의 적극재산이 346,801,536원(=31,801,536원 + 315,000,000원)이고 소극재산이 50,000,000원인데, C이 위 적극재산 중 315,000,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, 피고와 C

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C은 이 사건 2차 증여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1, 2차 증여 당시에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그 법률행위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피고가 C의 처이고, 이 사건 2차 증여계약 당시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일부조로 수령하여 가지고 있던 315,000,000원과 공시지가 31,801,536원의 경기도 가평군 M 임야 42,744㎡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315,000,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,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,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의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98,784,9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그리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315,000,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98,784,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98,784,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백웅철

1) C은 2018. 12. 21. 위 가평군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